



V.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감면하는바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2. 대상사업의 범위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의 사업은 다음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경우 ①산업지원서비스업(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②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

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6)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7)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9)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3. 감면기간 및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토지분외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취득후 5년간	전액 감면	전액 과표공제
5년후 7년간	50% 감면	50% 과표공제

그러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감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여기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간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여기서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사례 】 외투기업의 공장구의 사업장에 대한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공장 밖의 사무소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행안부 지방세운영-1802, 2008. 10. 15)

【 사례 】 외투기업에 대한 설립등기시 감면 적용 대상 판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가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보이나, 법인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증자”에 대한 감면과 같이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행안부 지방세 운영-1924, 2008. 10. 23)

[사례] 지방세감면대상인 신고사업의 범위(중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한다 할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출되는 조세감면신청서류는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서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조세감면 신청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함(행안부 지방세운영-1210, 2011. 3. 16)

[사례]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범위 및 감면 사업장과 안분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사업 등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특례제도임을 비추어볼 때, 재산세의 감면범위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외국인투자 사업과 기타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대상세액은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생산시설 등의 사업장은 각 특성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므로 감면대상 재산부문의 세액산출을 위한 감면비율의 결정 또한 그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감면사업장과 기타사업장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 를 “총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 로 나누어 산정하고,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의 감면비율 산정방식(감면사업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지방세운영과-4562호('09.10.28) 참조)(행안부 지방세운영과-3384, 2011. 7. 14)

4. 증자시 감면범위

(1) 감면 적용 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증자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 범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 방법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 즉, 외국인기업의 증자 자본금중 일부에 대하여 감면배제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후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배제사업이 함께있는 경우에는 별도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세(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비율산정기준과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에 해당한다.

(갑설) 일반적인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text{감면비율} = \{(\text{증자전 외국투자 자본금} \times \text{감면율}) + (\text{증자시 외국투자 자본금} \times \text{감면율})\} / \text{당해 사업연도 총 자본금}$$

(을설)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text{감면비율} = \frac{\begin{array}{cc} \text{증자전} & \text{증자} \\ \text{감면외자} \times \text{감면율} + \text{감면외자} \times \text{감면율} \end{array}}{\text{총감면외자}} \times \frac{\begin{array}{cc} \text{증자전} & \text{증자시} \\ \text{외자} & + \text{외자} \end{array}}{\text{총자본금}}$$

(가) 각 산정방식별 감면비율 비교 (부동산 취득전제)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6\text{억} \times 50\%) + (94\text{억} \times 100\%) + (200\text{억} \times 0\%)\} / 300\text{억} = 32.33\%$$

둘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6\text{억} \times 50\%) + (94\text{억} \times 100\%) + (200\text{억} \times 0\%)] / 300\text{억} \times (100 + 200) / 300 = 32.33\%$$

년도 별	총 자본금	외국인 투자액	증자액		외투 비율	감면비율(%)			
			내국인	외국인		계	100	50	0
×1	6	6		6	100	50	-	50	
×2	-	-	-	-	100	100	100		
×3	34	34	-	34	100	100	100		
×4	60	60	-	60	100	100	100		
×5	-	-	-	-	100	100	100		
×6	300	200	-	200	100	0	0		

이 경우에는 내국인의 투자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감면비율이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이 동일하지만 내국인의 투자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나)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산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외투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 현재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율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 그 시점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 감면비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투비율에 대한 감면을 적용 기산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간은 100% 적용하고 그후 2년간은 50%를 적용하여 감면하는바, 이 경우 감면판단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일 등록세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시]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자본금이 100억원이나 외국인투자액이 70억원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사업용 토지를 70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액은?

- 외투기업의 투자비율 산정 : 70억원 / 100억원 = 70%
- 감면기간의 적용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이므로 50%
- 감면액 산정 : 70억원 × 2% = 1.4억원
- 1.4억원 × 50% × 70% = 3,850만원

년도별	총 자본금	외국인 투자액	증자액		외투 비율	감면비율(%)				감면 비율
			내국인	외국인		계	100	50	0	
×××1	1000	600			60	60	60			600
×××2			-	-	60	60	60			600
×××3			-	-	60	60	60			600
×××4	1500	900	200	300	60	60	60			600
×××5			-	-	60	60	60			600
×××6			-	-	60			30		600
			-	-	60		60			300
×××7			-	-	60			30		600
			-	-	60		60			300

제1차 부동산 취득(1000억원)

	2000	1400	-	500	70		70			500
×××8			-	-	70				0	600
			-	-	70			35		300
			-	-	70		70			500
			-	-	70				0	600
			-	-	70			35		300
			-	-	70		70			300

제2차 부동산 취득(600억원)

이와 같이 당해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각각 5년간을 100%를 적용하고 그후 2년간을 5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차례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상기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투자비율의 산정은 각각 사업년도 마다 총 자본금중에서 외국인 투자금을 나눈값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6의 경우에는 60%(900/1500억원)가 되나 감면비율은 최초투자분(×××1년의 600억원)은 5년이 경과되어 50%감면이 되고, 증자분(×××6년의 300억원)만 100%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제1차 부동산 취득(1000억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외투기업의 취득세액 산출 : 1000억원 × 2% = 20억원
- 외투기업의 투자비율 산정 : 900억원 / 1500억원 = 60%
- 감면율 적용 : 600억원은 50%, 300억원은 100% 적용
- 감면액산정 : 20억원 × 60% × (600 × 50% + 300 × 100%) / 1500
 = 12억원 × (300 + 300) / 1500
 = 12억원 × 40% = 4.8 억원

제2차 부동산 취득(600억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외투기업의 취득세액 산출 : $600\text{억원} \times 2\% = 12\text{억원}$
- 외투기업의 투자비율 산정 : $1400\text{억원} / 2000\text{억원} = 70\%$
- 감면을 적용 : 600억원은 0%, 300억원은 50%, 500억원은 100% 적용
- 감면액산정 : $12\text{억원} \times 70\% \times (600 \times 0\% + 300 \times 50\% + 500 \times 100\%) / 2000$
 $= 12\text{억원} \times (0 + 150 + 500) / 2000$
 $= 12\text{억원} \times 32.5\% = 3.9\text{억원}$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기업의 1990년도 원시투자 자본금이 300억원인 상태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200억원씩 증자하여 2007.5월 고도기술수반사업 A를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물 A를, 고도기술수반사업 B를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물 B를 신축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비율은 $[(400/700) \times 100\%]$ 이 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9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세가 감면된 후 외국인투자자가 그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부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그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행자부 세정-3183, 2007. 8. 10)고 동 개정내용을 2009.1.1. 이후 등기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2009년 중에 주식을 이전·교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다(행안부 지방세운영-35, 2010. 1. 5)

[사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1조의 4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를 준용토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6년 1월 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비율이 계속 100%인 상태에서 4차 증자등기일 이후 공장을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해 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 산출은 각각의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증자시점별로 외국인투자비율 100%를 적용하되, 감면비율 산정은 각 증자시점(사업개시일)별로 감면비율 100% 또는 50% 적용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총자본금중 당해 증자분(외국인투자금액)별로 감면비율 및 적용기간을 산정하여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행자부 세정4491, 2007. 11.1)되는지?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08-0353)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고,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에서는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인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재국조-93, 2004.2.13. 및 서면2탐-260, 2004.2.23.).

$$\text{감면비율} = \frac{\text{증자전 감면외자} \times \text{감면율} + \text{증자 감면외자} \times \text{감면율}}{\text{총감면외자}} \times \frac{\text{증자전 외자} + \text{증자시 외자}}{\text{총자본금}}$$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이외 지방세를 포함한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모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방법 [감면비율 = ((증자전 외국인투자 자본금 × 감면율) + (증자시 외국인투자 자본금 × 감면율)) / 당해 사업 연도 총 자본금]"에 의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외자의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기업이, 채무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기업보다 감면비율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당초감면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지방세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행안부 지방세운영-4562, 2009. 10. 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에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 방법

(단위 : 억원)

구분	증자일자	증자 자본금		
		총액	외국인투자 자본금	감면배제자본금(*)
최초투자	2001.08.16.	6	6	-
1차 증자	2003.06.03.	34	34	-
2차 증자	2004.05.13.	60	60	-
3차 증자	2006.05.29.	200	200	200
합계		300	300	200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의 등록세 감면기준

○ 관련 법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제1항

○ 쟁점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까지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석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최초 투자 시 감면규정인 같은 법 제121의2를 준용하여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만큼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행안부 지방세운영-5345, 2009. 12. 17)

※ 증자분에 대한 사업용재산 관한 등기는 감면대상이나, 법인등기(자본·출자액 증가 등기 등)는 제외됨

5. 감면의 사후 관리 및 추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정한다.

1.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 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 및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등록말소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②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

1.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자가 그 감면 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의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감면신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비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지방세과세 등 운영에 차질없기 바람(행자부 세정 13430 -715, 2001.6.26.).

당 초	변 경
· 외국인투자비율은 총자본금에 대한 외국인 자본금비율로 적용함(행자부 세정 13407-495, 2000.4.10.).	·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외국인 자본금비율로 함.

【사 례】 골프회원권의 사업용재산의 범위 포함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장시설(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을 말하며 골프회원권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행자부 세정-1683, 2004. 6. 22)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점주주의 감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귀사)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외국인투자가)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지 아니하다면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감면 되지 아니하는 것임(행자부 세정-3911, 2004. 11. 4)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사업에 대한 감면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3.4.22에 자본금 증자 변경등기(사업개시일)를 하고' 03.9.25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03.10.29자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면 별첨의 우리부 심사결정 2003-125(2003.6.30)대호를 참고바람(행자부 세정- 2072, 2004. 7.14)

[사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비율 중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식상당부분을 제외한 비율을 의미함(재경부 경총 41500-315, 2001.6.23.). ☺